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화순군수
 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18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2. 3. 18
- (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-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자 가구수 등을 고려 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으로 형평을 유지하고,
-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복지행정의 기반을 조기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부원을 증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 : 602 -> 607 (+5)
- 집행기관의 정원 : 587명 -> 592 명 (+5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배치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, 본 군에 5명이 추가 배정되어 서비스 수준이 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 (일본 67세대, 벨기에·노르웨이 60-100세대, 본군 97가구,)
-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"생략"

5. 토론요지
"생략"

6. 심사결과
"원안의결"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2 명
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2명이며 다음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7명2. 의회사무과 정원 : 15명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7명이며 다음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92명2. 의회사무과 정원 : 15명